

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

청년들의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『2023년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27일
보건복지부장관

1. 공모 개요

□ 목적

-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

□ 공모지역 및 규모, 공모액, 공모기간, 사업기간

- 공모지역 및 규모 : 17개 시·도별 1~3개, 총 30개 사업단
- 공모액 (국고) : 15.13억원 (지자체보조, 서울 50%, 지방 70%)
 - (인건비) 각 사업단별 행정인력, 수퍼바이저 각 1인
 - * (행정인력) 2,500천원(주40시간, 월단가)×10개월×30개사업단×70%(평균보조율)
 - (수퍼바이저) 3,800천원(주40시간, 월단가)×10개월×30개사업단×70%(평균보조율)
 - (설치비) 제공인력 교육비, 홍보 등 사업단 초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(1회)
 - * 9백만원×1회×30개사업단×70%(평균보조율)
- 공모기간 : 2023.1.27(금)~2023.2.15(수)
- 사업기간 : 2023년 3~12월(10개월)

□ 사업내용

-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,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, 초등돌봄서비스(신규), 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중 택1

구분	정신건강	신체건강	초등돌봄	자체개발
사업명	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(붙임1)	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(사업단 한해 시범 참여)		
		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(붙임2)	초등돌봄 서비스(붙임3)	자체개발서비스

* 사업단이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,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표준모델(붙임2,3) 적용 또는 지역 맞춤형으로 변경신청 가능

< '초등돌봄서비스' 표준모델 세부 내용 >

대상	기간.한도	종류	회당 이용시간	회당 단가(원)	총 횟수
초등학생을 둔 부모 등 보호자 * (우선지원) 한부모, 맞벌이 (B형은 장애아동)	A형은 월24만원 B형은 월26.4만원 (5개월)	A. 학습지원	2시간	30,000	40회 (월8회)
		B. 동행지원	1시간 이내	11,000	120회 (월24회)

○ 서비스 본인부담금 차등화 적용

- 신규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소득기준별 본인부담 비율을 5~100% 범위로 차등 적용

구분	소득기준	본인부담 비율
초등돌봄 서비스, 자체개발 서비스	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서비스 금액의 5%
	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	서비스 금액의 10%
	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	서비스 금액의 20%
	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	서비스 금액의 40%
	기준 중위소득 160% 이하	서비스 금액의 70%
	기준 중위소득 160% 초과	서비스 금액의 100%

□ 청년사업단 구성

○ (기관자격)

-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“대학”
 - *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 등,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“사회복지법인”
-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“사회적협동조합” 또는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에 따른 “사회적기업”
-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
 - *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, 휴·폐업,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

○ (구성인력) 단장 1인(겸임가능), 행정인력 1인, 슈퍼바이저 1인, 제공인력 최소 4인

- (단장) 대학교수(전임교원), 법인 등 기관은 기관장 또는 간부
- (채용인력) 만19~34세* 청년을 70% 이상 채용
 - *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,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 가능
 - ** 슈퍼바이저는 만 55세 미만, 제공인력 경력요건 2배 이상 충족(최소 2년)
- (근로조건) 행정인력 및 슈퍼바이저는 주 40시간 또는 주 20시간*, 제공인력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계약에 따라 탄력적 운영** 가능
 - * 주 40시간 1명 채용이 어려운 경우 주 20시간 2명 채용 가능
 - ** 청년마음건강,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의 경우 주40시간에 상응하는 인력 채용 (주20시간 인력의 경우 2인을 채용, 주10시간 인력의 경우 4인을 채용)
다만 초등돌봄 서비스는 재가방문형인 점을 감안, 주 40시간 의무는 제외하되 10인 이상 채용하여야 함
- ※ 운영 상황에 따라 인건비 추가 지급 가능, 슈퍼바이저 외 제공인력은 바우처 수익으로 인건비 총당,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단의 성격을 고려해 청년 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바우처 수익으로 인건비를 높은 비중으로 지급하도록 설계

<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>

○ 컨소시엄의 구성

-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
- 컨소시엄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

○ 주관기관 선정 및 역할

-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 기관 중 역할, 대표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 하되, 주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하에 사업 수행
 - *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
- 주관기관이 사업비 관리, 민원관리, 제공인력·대상자 관리, 사업실적보고 등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 책임

○ 협력기관의 요건 및 변경(추가·탈퇴)

- 협력기관은 청년사업단 참여 자격을 가진 기관 중 관할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기관
- 사업단이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
 - *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(탈퇴)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, 추가(탈퇴)기관명, 사업비 배분현황 및 조정(삭감)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

□ 사업방식 : 공모방식

○ 사업 참여희망 기관이 사업유형을 선택하여 관할 시·도에 신청, 시·도별 1차 심사 후, 복지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*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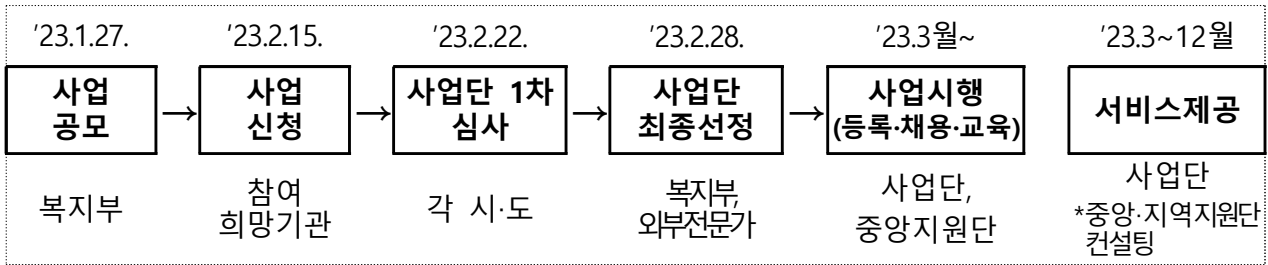
- * 복지부,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

※ (심사원칙) '22년 6개 우수사업단은 참여 희망 시 당연 선정, '22년 하반기 현장점검 시 인력 미충족 사업단은 후(後) 순위, 야간서비스 제공 시 우대

- 초등돌봄서비스(신규)를 제공하는 사업단은 채용인원 다수일 경우 가점 부여

□ 사업절차

* 심사일정 등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



2. 유의사항

- 사업심사는 서면심사,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,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복지부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, 질문을 할 수 있으며, 지자체와 참여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
 - 조사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신청된 사업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집행 가능성, 효율성,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
- 지자체와 참여기관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응 투자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
-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, 당초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*,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, 복지부는 사업선정 취소, 사업 중단, 사업비 조정,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
 - * 일정기간 이상 채용 부진 또는 사업실적이 계획 대비 현저히 낮은 경우
- 시·도별 바우처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 이용자 목표치는 조정될 수 있음
- 사업집행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선정 후 별도의 지침 송부 예정

3. 행정사항

□ 제출서류

- 사업신청서 1부 【서식 1】
- 사업계획 요약서 1부 【서식 2】
- 사업계획서 1부 【서식 3】
 - ①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·훈련 계획 1부 <별첨 1>
 - ② 설치비 산출내역 <별첨 2>
 - ③ 현금·현물 추가투자 협약서 1부 <별첨 3>
- 참여기관 사업 참여 신청서 【서식 4】
- 참여기관 주요 사업 실적 (3년간) 1부 【서식 5】
-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1부

□ 접수기관

- 접수기관: 사업참여 신청기관¹⁾ → 각 시도, 각 시도²⁾→보건복지부
- * 1) 서식2~서식5, 첨부서류 등 2) 서식1~서식5, 첨부서류 등
- 사업참여 희망기관은 각 시·도에 서면제출 : '23.2.15(수)까지
(공문 접수 일자 기준)
- 각 시·도는 1차 심사 후 보건복지부 제출 : '23.2.22(수)까지
(공문 접수 일자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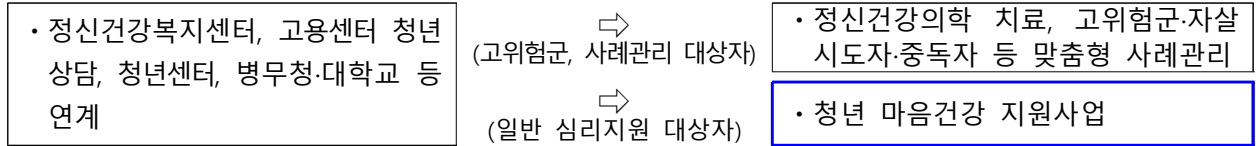
□ 관련 문의

- 신청계획 : 각 시·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자
- 작성서식 : 복지부 홈페이지 (www.mohw.go.kr)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

붙임1

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개요

□ 전국 청년 대상 3개월(10회기) 간 1: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



○ (서비스대상)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, 소득기준 없음

* 우선지원 : (1순위)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종료아동 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

○ (서비스내용) 사전·사후검사, 3개월(10회기)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지원(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)

-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

서비스종류	서비스내용	제공시간	제공횟수
사전·사후검사	·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(MMPI-2, BDI 등 검사도구 활용)	90분	사전·사후 각 1회
서비스제공 (1:1 원칙)	·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- 심리정서적인 문제(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 및 예방 -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-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	회당 50분	총 8회
종결상담	·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(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 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)	-	1회

○ (서비스가격) 월 24만원(A) 또는 28만원(B)(선택, 본인부담금 10%)

* 우선순위 1순위는 전액 지원

○ (제공인력) 서비스 단가 유형(A형, B형)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

- (A형) 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, 전문상담교사, 청소년상담사, 상담 분야를 전공(심리·상담학과 등)하고 실무경력(학사2년, 석사1년)이 있는 자
- (B형) 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 1급, 상담분야를 전공(심리·상담학과 등)하고 실무경력(학사4년, 석사3년, 박사1년)이 있는 자

○ (신청방법)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온라인) 신청('23.상반기 예정)

붙임2

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(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)

항목	내 용								
① 목적	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								
② 서비스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소득기준 : 소득기준 없음 ▷ 연령기준 : 만 19세~34세 청년(지자체 조례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) ▷ 욕구기준 : BMI 23 이상 18.5 미만 								
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제공기관 : ‘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▷ 제공인력 :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생활스포츠지도사, 전문스포츠지도사, 다만,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-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-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* “군” 단위 지역과 ‘성장촉진지역’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								
④ 서비스 가격/서비스 제공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서비스 가격 : 월 24만원 (본인부담금 10%) ▷ 서비스 기간 : 3개월(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) 								
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	<p>1) 서비스내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서비스 내용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서비스횟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기본서비스</td> <td><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> - 유산소, 근력향상,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-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-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</td> <td>1:1 주 2회 1:2 주 3회 (회당 60분)</td> </tr> <tr> <td>부가서비스 - 자세·체형교정(거북목, 라운드숄더, 척추·골반 이상 등) 운동</td> <td>1:3 주3회 (회당 70분) 1:4 주3회 (회당 90분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) 서비스 제공절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단계 : 등록, 상담, 욕구과약 • 2단계 :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/평가(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) • 3단계 :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• 4단계 :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• 5단계 : 사후관리(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) 	구분	서비스 내용	서비스횟수	기본서비스	<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> - 유산소, 근력향상,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-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-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	1:1 주 2회 1:2 주 3회 (회당 60분)	부가서비스 - 자세·체형교정(거북목, 라운드숄더, 척추·골반 이상 등) 운동	1:3 주3회 (회당 70분) 1:4 주3회 (회당 90분)
구분	서비스 내용	서비스횟수							
기본서비스	<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> - 유산소, 근력향상,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-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-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	1:1 주 2회 1:2 주 3회 (회당 60분)							
	부가서비스 - 자세·체형교정(거북목, 라운드숄더, 척추·골반 이상 등) 운동	1:3 주3회 (회당 70분) 1:4 주3회 (회당 90분)							
⑥ 집단규모	1:1-1:4								

붙임3

초등돌봄서비스 (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, '23 신규)

항목	내 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목적	맞벌이,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욕구에 대응, 돌봄 사각지대 해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서비스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득기준 : 소득기준 없음 ▶ 욕구기준 : 초등학생을 둔 보호자(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) ▶ 우선순위 :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(B유형 서비스에 한해 장애아동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포함)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제공기관 /제공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제공기관 : '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' 제16조의 등록기관 ▶ 제공인력 : 초등교육과, 유아교육과, 아동학과, 교육학과(교과목 포함), 체육교육과, 예체능 관련학과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(초등학교,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,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%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)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서비스 가격/ 제공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서비스 가격 : A형 월 24만원, B형 월 26만4천원 ▶ 서비스 기간 : 5개월(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) - 서비스 선택하여 구성 가능(학습지원, 동행지원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1회당 이용시간</th> <th>회당 가격(원)</th> <th>횟수</th> <th>2인기준 가격(원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. 학습지원(1:1)</td> <td>2시간</td> <td>30,000</td> <td>월8회</td> <td>40,000원(월6회)</td> </tr> <tr> <td>B. 동행지원(1:1)</td> <td>1시간 이내</td> <td>11,000</td> <td>월24회</td> <td>16,500(월16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*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소득 기준</th> <th>본인부담 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초수급자 및 차상위</td> <td>서비스 금액의 5%</td> </tr> <tr> <td>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</td> <td>서비스 금액의 10%</td> </tr> <tr> <td>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</td> <td>서비스 금액의 20%</td> </tr> <tr> <td>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</td> <td>서비스 금액의 40%</td> </tr> <tr> <td>기준 중위소득 160% 이하</td> <td>서비스 금액의 70%</td> </tr> <tr> <td>기준 중위소득 160% 초과</td> <td>서비스 금액의 10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1회당 이용시간	회당 가격(원)	횟수	2인기준 가격(원)	A. 학습지원(1:1)	2시간	30,000	월8회	40,000원(월6회)	B. 동행지원(1:1)	1시간 이내	11,000	월24회	16,500(월16회)	소득 기준	본인부담 비율	기초수급자 및 차상위	서비스 금액의 5%	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	서비스 금액의 10%	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	서비스 금액의 20%	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	서비스 금액의 40%	기준 중위소득 160% 이하	서비스 금액의 70%	기준 중위소득 160% 초과	서비스 금액의 100%
구분	1회당 이용시간	회당 가격(원)	횟수	2인기준 가격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
A. 학습지원(1:1)	2시간	30,000	월8회	40,000원(월6회)																										
B. 동행지원(1:1)	1시간 이내	11,000	월24회	16,500(월16회)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득 기준	본인부담 비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초수급자 및 차상위	서비스 금액의 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	서비스 금액의 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	서비스 금액의 2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	서비스 금액의 4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 중위소득 160% 이하	서비스 금액의 7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 중위소득 160% 초과	서비스 금액의 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서비스 내용 /제공절차	<p>1) 서비스 내용 : 서비스별 선택하여 구체화, 재가 방문형(이동 포함) 서비스 제공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서비스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학습지원</td> <td>교과과정 복습·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</td> </tr> <tr> <td>동행지원</td> <td>등·하교(원)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, 안전메시지 전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) 서비스 제공절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단계 : 등록, 상담, 욕구파악 · 2단계 :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· 3단계 : 서비스 제공 	구분	서비스 내용	학습지원	교과과정 복습·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	동행지원	등·하교(원)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, 안전메시지 전송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서비스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학습지원	교과과정 복습·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동행지원	등·하교(원)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, 안전메시지 전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*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, **아동안전 확보계획**을 함께 수립하여 제출 (필요시 아동 관련 범죄 경력 조회 가능)

【서식1】 사업 신청서

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신청서					
신청시도					
사업명					
주관부서	() 국 () 과(팀)	주소			
(협조부서)	() 국 () 과(팀)				
청년사업단 참여기관	기관명				
	담당자		전화번호(E-mail)		
시·도 담당자	소속		전화번호		
	직위		핸드폰		
	성명		E-mail		
사업예산	총사업비	천원	국 고	천원	
			지방비	천원	
			기 타	천원	
<p>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합니다.</p> <p>2023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00시장·도지사 (인)</p>					

- *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(시행부서),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는 공란처리
- * 사업단 담당자는 시도에 신청한 참여기관의 담당자를 기입

【서식 2】 사업계획 요약서

시도명					
사업단명					
기관명		기관 성격	대학 산학협력단/사회복지법인 등		
1. 사업 개요	사업명	청년마음건강/청년신체건강/초등돌봄/자체개발(사업명) 중 택1			
	사업목적				
	사업기간		서비스 개시 월		
	사업비	총사업비 (A+B+C)	국비(A)	지방비 (B)	기타(C)
2. 서비스 내용	서비스 제공내용	구체적으로 작성(자체개발의 경우 회당 제공기간/횟수/시간 기재)			
	채용인력	구분	인원 수	자격기준(자격증)	
		제공인력			
		행정인력			
		수퍼바이저			
3. 지원 대상	대상자	대상자 기준	예상 대상자 수(계획인원/전체사업기간)		
4. 성과 목표표	성과 목표	성과 지표	성과 달성 목표치	비고	
	1.				
	2.				
	3.				
	4.				

【서식 3】 사업계획서

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계획서(예시)

I. 사업 개요

① 사업 참여기관

○ 사업 참여기관 현황

참여기관명	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	기관 성격 (예시)	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
	(직위) (성명)	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	

○ 보유시설 및 장비 운용계획

○ 자체인력 운용계획

② 서비스 제공내용(구체적으로 작성)

○

○

- * 자체개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내용, 서비스 제공기간, 횟수, 시간, 1회당 제공규모, 모집절차 등 포함하여 작성

③ 서비스별 제공 인력

서비스 명	채용 목표인원(명)	인력모집 방안	교육 방안

4 서비스 대상(서비스별로 작성)

- 서비스 수요 추계
- 대상자 선정기준
- 대상자 모집·교육 방법 <별첨1>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·훈련 계획서

5 소요예산 및 서비스가격 산출

- 소요예산

(단위 : 천원)

계 (A+B+C)	기본 예산			기타(C)	
	소계	국비(A)	지방비(B)	지자체 추가부담액	기 타 (민간추가투자 등)

- 서비스가격 산출(자체개발 서비스에만 해당)

- 산출내역 :

<별첨2> 운영비 산출내역서

<별첨3> 현금·현물 추가투자 협약서

6 자체성과 지표

성과목표	성과지표명	성과달성 목표치 (산출방법)	성과측정 방법
①			
②			
③			

II. 기관 선정 필요사유 및 기타사항

1 기관 선정 필요사유

-

② 참여기관의 전문성

○

③ 사업관리 방안(모니터링 계획 등)

○

④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

○

<별첨 1>

제 공 인 력 모 집 및 교 육 · 훈 련 계 획 서

사 업 명			
제 공 기 관 명		총괄책임자	
모 집 계 획	제 공 인 력 모 집 계 획 을 구 체 적 으 로 적 시		
교 육 내 용	각 교 육 내 용 및 총 교 육 시 간		
추 진 계 획	월 단 위 교 육 추 진 계 획		

<별첨 2>

설치비 산출내역

항목별 산출내역

- 관리수당 :
- 법정부담금 :
- 간접비 :
- 운영경비 :
- 기타비용 :
- 홍보 및 교육 관련 비용 :

【 세부내역 】

항목	산출내역	총액(천원)	1인당(천원)	비율	비고
합 계				100%	
간접비					
교육비					
임차비 (장비, 장소)					
홍보비					
....					

<별첨 3>

현금·현물 추가투자 협약서

※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(선정 시 우대 요건)

사업명			
시도명 (또는 참여기관명)		담당자 (연락처)	

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.

가. 추가 투자 금액 : 천원

○ 현금 : 천원

○ 현물 : 천원

나. 투자 예정일 : 년 월 일

다. 현물출연 상세 내역

구 분		금 액 (천원)	
총액			
세부 내용	장비	출 연 금 액	
		주요출연내용	
	토지·시설	출 연 금 액	
		주요출연내용	
	기타	출 연 금 액	
		주요출연내용	

* 붙임 : 현물출연내역 증빙

2023년 월 일

(시·도지사, 참여기관 대표)

직인

【서식 5】

참여기관 주요 사업 실적 (3년간)

※사회서비스분야 주요 실적

참여기관명 :

연번	①사업명	사 업 기 간	②계약금액 (자사실적)	발주처 (관공서명)	③구체적 업무 내용	비 고

※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

- ① 사업명(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관련한 것만 기재) :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
- ② 계약금액(백만원) :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
-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

【참고】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

□ 사업참여 기관

- 사업명칭: “**시도명 ○○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**”으로 사용
 - 사업단 명칭은 지역명칭을 포함하여 기재
 - * 예시 : 서울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, 전남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등
- 참여기관 현황

참여기관명	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	기관 성격 (예시)	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
	(직위) (성명)	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	

□ 서비스 내용

- 서비스명 기재
 - 단, 자체개발 사업의 경우 서비스 종류 및 정의, 제공시간, 제공 횟수, 집단규모, 단가 산출근거 등 내용 작성
-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 가능(무료제공)
- 이용자 선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상세 기재

□ 서비스 제공인력

서비스 명	채용 목표인원(명)	인력 모집 방안	교육 방안

- 해당 자격소지·교육이수자,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
 - * 제공인력 모집 및 훈련 계획 : <별첨 1>
- 자체개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공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여 작성

□ 서비스 대상

○ 서비스 수요추계

<현재 커버리지>		<목표집단>		<모집단>	
* 해당없음		000명 (모집단의 0.0%)		(예시) 00도 관내 19~34세 청년층 0000명	

○ 대상자 선정기준(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외)

- 사업 취지, 서비스 욕구,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
-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지양
-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순위 기재

○ 대상자 모집방법

-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수요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모집방안 강구

□ 소요예산

○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추가 투자가 있을 경우 기타(C)에 작성

* 현금·현물 추가투자 협약서 <별첨 3> 첨부

(단위 : 천원)

계 (A+B+C)	기본 예산			기타(C)	
	소계	국비(A)	지방비(B)	지자체 추가부담액	기타 민간추가투자 등

* 국고보조율 : 서울 50%, 그 외 16개 시·도 70%

□ 성과 목표 및 지표

○ 자체 성과지표

- 서비스 만족도, 개선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등
-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,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지표 개발 가능

- *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·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 시 감점 조치

○ 성과지표 측정방법

- 제시된 “각각”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
- 신체건강 부분은 인바디(체성분측정기), 정신건강 부분은 우울증(BDI) 또는 스트레스(PSS) 측정 중 택 1(필수)

□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

- 대상자 참여 저조(수요 부족)시 대책
-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 시 대책
-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

□ 사업관리 방안(행정사항)

- 모니터링 체계
 - 시·도 모니터링 실시(매월) → 중앙지원단 제출 → 복지부 보고(익일 5일 한)
 - 시·도 전체사업 결과 취합 복지부 보고(6월, 11월)
 - 모니터링 항목 : 서비스 제공량, 채용인력, 건의사항 등
- 시·도 점검·관리 : 수시
 -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제공 여부, 채용 현황, 부정수급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·관리 실시